

13. 國民住宅基金 貸出案内

資料提供：建設部・韓國住宅銀行

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1994년도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민 주택기금대출은 다음과 같다.

1. 대출종류 및 신청자격

대 출 종 류	신 청 자 격
공공분양주택자금	•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및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
공공임대주택자금	•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및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
근로복지·사원임대주택자금	• 건설부의 “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”에서 정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분양(사원임대 주택자금은 임대)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물량배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, 고용자 및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
조합주택자금	•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시장·군수의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합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조합

대출종류	신청자격
다가구단독주택자금	• 시장·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분
다세대주택자금	• 시장·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분
임대주택중도급자금	• 공공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분

2. 신청접수 및 지원기준

자금별	접수기간	지원기준
공공분양·공공임대주택자금	연중접수	• '94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한국주택은행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.
근로복지·사원임대조합·다가구단독주택자금	상동	• '94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.
다세대주택자금	'94.4.11~4.23	• '94 지원계획(10,000호 700억원) 범위내에서 한국주택은행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. • 대지가격이 ㎡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사업 미등록업자가 연간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임대주택중도급자금	추후결정	•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.

3. 대출조건

자금별	주택규모 (주거전용면적)	호당대출한도	대출기간 및 상환방법	이율
공공분양 조합	50㎡초과-60㎡이하	1,200만원이내	1년거치	연 7.5%~
	50㎡이하	1,400만원이내	19년 할부상환	9.5%

자금별	주택규모 (주거 전용면적)	호당대출한도	대출기간 및 상환방법	이율
공공임대	60㎡이하	1,600만원이내	10년이내의 임대 기간동안 거치후 20년 할부상환	연 3.0%
근로복지	60㎡이하	1,600만원이내	5년거치 20년 할부상환	연 7.5%~ 8.5% (상환기간중 : 연 7.5%~ 9.5%)
사원임대	60㎡이하	1,700만원이내	5년거치 20년 할부상환	연 3.0%
다가구	가구당 20㎡~60㎡이 하 단, 1가구는 85㎡ 까지 허용	3가구기준 5,500만원이내 (가구당 700만 원)	1년이내 정기상환 단, 대출금의 50 % 상환시 1년 연 장	연 9.5%
다세대	60㎡이하	700만원이내	1년거치 19년 할부상환	연 9.5%
임대주택 중도금자금	60㎡이하	400만원이내	일정공정을 도달 후 부터 입주시까지	연 3.0%

※공공분양주택, 근로복지주택 및 주택건설업체가 건설·공급하는 사원임대주택의 건설기간중 사업주체에 대한 대출조건은 연 9.5%, 3년이내 정기상환이며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대출조건은 연 9.5%, 2년이내 정기상환이다.

※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이율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.

4. 신청시 제출서류

(1)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

- (2) 토지등기부등본
- (3) 기타 필요서류

5. 기타사항

- (1)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은 분은 주택건설촉진법, 임대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2) 국민주택기금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은행 각 지점, 지역본부, 본점 주택기금부(769-8653~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'94년은 성실시공 元年의 해